

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

2024. 11.

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
(도시철도국)

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

〈'24. 11, 도시철도설계부〉

☐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

☐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

- 제7차 : 1건, 200,000천원

-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(200,000천원)

: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로 도시철도 이용효율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된 200,000천원을 간주처리함

※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-1774호(2024.5.20.)

붙임 :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(교부결정 통지 공문) 각 1부

○ 제7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

- 세입예산

(단위:천원)

세입과목	기정예산	금회간주	변경예산
511-01 (국고보조금)	0	200,000	200,000

- 세출예산

(단위:천원)

예 산 과 목				기정예산	금회간주	변경예산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	
신교통수단 도입	경전철 건설사업	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	시설비 (401-01)	(×0) 0	(×200,000) 200,000	(×200,000) 200,000

○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(지하철 건설지원, 24년도 3차) 공문
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-1774(2024.5.20.))



국토교통부
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(지하철 건설지원, 24년도 3차)

1.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-876('24.5.17.)호 관련입니다.
2. '지하철 건설지원' 단위사업 중 '부산 사상-하단 도시철도 건설' 세부사업 등 6건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사업부서 및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액	기교부액	금회교부액	교부잔액	교부처
지하철 건설지원 3031	부산 사상-하단 도시철도 건설 316-330	18,800	13,203	3,000	2,597	부산광역시장
	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320-330	130,000	-	18,000	112,000	광주광역시장
	양산도시철도 건설 322-330	41,462	39,044	2,418	-	경상남도지사
	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333-330	114,500	23,165	15,000	76,335	인천광역시장
	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335-330	34,200	17,100	1,894	15,206	서울특별시장
	우이신설선 연장선 352-330	1,300	-	200	1,100	

붙임 :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(지하철 건설지원, 24년도 3차) 1부. 끝.